

최 고 공 고 문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4년 03월 03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세대주 성명	성 명 생 년 월 일	주 소	지연 신고사항
최**	최** 1984-03-05	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495번길	무단전출
이**	이** 1962-09-24	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로69번길	무단전출
강**	강** 1975-04-21	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로10번길	무단전출
강**	홍** 1978-12-27	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로10번길	무단전출
강**	강** 2003-04-17	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로10번길	무단전출
강**	강** 2007-07-27	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로10번길	무단전출
박**	박** 1978-04-26	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506번안길	무단전출
김**	김** 1965-12-07	인천광역시 서구 도요지로42번길	무단전출

※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등록, 정정,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제2항).

(담당자 : 윤 명훈 문의전화 : 032-560-4601)

2014년 02월 22일

검암경서동장 인

